



고용노동부

전북지방노동위원회

수신 전북특별자치도를 원청으로 두고 있는 하청노동조합 귀하
(경유)

제목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대한 의견 요청

1. 관련 : 전북2026단위3 전북특별자치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
2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사용자 정의가 2026. 3. 10. '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 사용자로 본다'라고 개정되었습니다.
3. 공공&돌봄노동조합이 2026. 3. 10.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(2026단위3)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, 전북특별자치도가 원청 또는 위탁업체인 하청 또는 수탁업체 소속 노동조합은 위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의견 있는 경우 2026. 3. 27.(금)까지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(전화: 063-240-1641, 이메일: eldai2006@korea.kr)로 연락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 취지

1. 전북도의 위탁사업 중 아이돌봄사업을 다른 사업과 교섭단위 분리
2. 공공&돌봄노동조합을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분리

신청 노동조합이 피신청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교섭의제

① 노동안전분야(특정)

- 폭언, 폭행, 성폭력, 성추행, 성희롱 아이돌보미 피해 의심시 해당 가정과 피해 아이돌보미의 분리, 상담과 치료회복 지원, 가해가정의 이용제한 등의 기준

② 작업환경 분야(특정):

- 동시돌봄의 기준, 근태관리의 기준, 아이돌보미의 세부 직무, 전담지원인력 아이돌보미 50명1명, 사례관리인력 아이돌보미 100명 1명 업무량에 따른 채용기준

③ 복리후생 분야(특정)

- 유급 경조휴가와 병가

④ 근로시간 분야(특정)

- 소정근로시간 기준, 이용가정별 이용시간, 회당 근로시간의 최소기준, 두가정 연계시 종료시간과 시작시간의 간격, 이용가정간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

⑤ 임금수당 분야(특정)

- 기본수급, 시간제 종합형 가산수당, 질병감염아동서비스지원 가산수당, 아동추가가산수당, 36개월 미만 영아수당, 3~5세 유아수당, 명절상여금, 경력가산상여금, 출퇴근교통비, 이용가정간교통비, 신규가정면접비, 취소수수료, 영아돌봄자격수당, 등하원교통비, 처우개선비, 건강검진비, 경력가산금 등 성평등가족부 사업안내서에 나오지 않는 각종수당

⑥ 고용형태

- 근로계약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단위기간 및 하한 소정근로시간 확정

⑦ 노동조합활동관련

- 근로시간면제,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및 기타 유급조합활동

*의견서 양식은 개별 통지 예정. 끝.

전북지방노동위원회



조사관

전결 2026. 3. 19.

김창관

협조자

시행 사무국-2651

(2026. 3. 19.)

접수

우 55014
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3층 (인후동1가 807-8, / <http://jeonbuk.nlrc.go.kr>
고용노동부 종합청사)

전화번호 063-240-1641

팩스번호 063-240-1606

/ eldai2006@korea.kr

/ 비공개(4,6)